#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 2022년 8월 26일 덕성여자대학교 도봉영재교육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관 4층 438호 Tel: 02-901-8604, Fax: 02-901-8606 http://gifted.duksung.ac.kr

모집요강 공고일 : 2022년 9월 2일(금)

# 2023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도봉영재교육원 신입생 모집요강

덕성여자대학교 도봉영재교육원에서는 2023학년도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1. 모집분야 및 인원

미지보아	모집	인원
모집분야	1반(현재 초 6학년)	2반(현재 중 1학년)
수학	15명	※9명
과학	15명	*3명
융합소프트웨어	10명	*3명

<sup>\*</sup>학년은 2022학년도 현재 학년을 기준으로 함.

\*1년간의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사사과정 선발 대상자가 됨.

# 2. 모집일정

모집일정	일자	시간	장소	비고
입학원서	0 (항)	12:00	http://gifted.duksung.ac.kr	홈페이지 양식
교부	9.6(화)	(예정)	※공지사항 → 2023 모집요강	사용
저청구			계좌: 하나 211-910005-69805	[입금자명]
전형료 나ㅂ			예금주:	학생이름(학교)
납부			(학)덕성여자대학교<영재교육원>	ex.나영재(영재초)
	9.12(월) ~10.7(금)	10:00 ~17:00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관 4층	방문
서류 제출	~10.7(=)	~17.00	438호	우편
			gifted@duksung.ac.kr	이메일
서류합격자	10 14(-7)	12:00	http://gifted.dukgung.og.kg	홈페이지
발표	10.14(금)	(예정)	http://gifted.duksung.ac.kr	[공지사항] 확인
인성/심층	10.29(토)	9:00	추후 공지	추후 공지
면접	10.23(上)	~17:00	구구 5시	구추 6시
최종합격자	   11 /(→)	12:00	http://gifted.dukgung.ag.kg	홈페이지
발표	11.4(금)	(예정)	http://gifted.duksung.ac.kr	[공지사항] 확인
합격자	11.7(월)	10:00	방문, 우편, 이메일 (주소는 위와 동	입학동의서,
등록	~11.11(급)	~17:00	일)	입금증 제출

#### 3. 교육 프로그램

가. 교육기간 : 2023년 3월 ~ 2023년 12월

나. 학기 중 프로그램 : 매월 격주 토요일 9시~13시(4시간) 진행 여름방학 프로그램 : 7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월~토(총 6일간) 진행 그 이 프로그램 : 참이서 건가 통간 도서프로그램 진행

그 외 프로그램: 창의성 검사, 특강, 독서프로그램 진행

다. 교육시수: 100시간 이상

라. 교육내용

1) 수학반 : 순수수학 및 응용수학 교육

2) 과학반 :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분야 통합 교육

3) 융합소프트웨어반 : 컴퓨터사고능력, 정보과학적모델링, 프로그래밍, 피지컬컴퓨팅 교육

마. 영재교육원 수업료 : 300,000원 (2017학년도부터 적용, 특별전형은 50% 부담) 영재교육원 캠프비 : 200,000원 (7월 중 납부)

\*\*영재교육원 운영비용은 도봉구에서 지원하며, 정규수업/집중수업/캠프 비용의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

#### 4. 지원자격

- 가. 모집요강 공고일 당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또는 중학교 1학년 학생
- 나. 2023학년도 계속 도봉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거주할 예정인 자. 즉, 재원 중에도 계속 도봉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
- 다. 지원 시 유의 사항
  - 1) 한 분야에만 응시할 수 있음.
  - 2)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영재교육원 혹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 중복하여 지원 가능. 중복 합격한 경우 한 곳만 등록하여야 함.
  - 3) 본 영재교육원 합격자는 이후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수 없음. 지원한 경우 합격통보 즉시 취소하여야 함.

### 5. 전형단계 및 선발방법

### 가. 일반전형

전형 단계	주관 기관	선발과정		선발방법
1단계	단위학교	집중관찰 대상자 선정	자기추천	가. 학교별 자체 계획에 의해 추진 나. 접수기간: 9.12(월)~10.7(금) 17:00까지
2단계	कु	서류심사 인성/심층 면접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가. 정원의 2배수 이내 선발 나. 합격자 발표: 10.14(금) 12:00 예정
3단계	재 교 육			가.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 분야별 면접 나. 일시: 10.29(토) 9:00~17:00
4단계	년 원			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나. 최종합격자 발표: 11.4(금)

### 나. 특별전형(사회통합전형)

- 1)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 2항,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른 사회통합대상자((구)사회적배려대상 자)를 정원의 20% 이내에서 우선 선발 (세부자격 요건은 <붙임1>, <붙임2> 참조)
- 2) 선발과정은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실시

### 6. 지원방법

가. 입학원서 교부

1) 일시 : 2022년 9월 6일 (화) 12:00

2) 영재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3년 모집요강]에 첨부

http://gifted.duksung.ac.kr

나. 전형료 납부

1) 금액: 40,000원 (※특별전형 지원자는 납부하지 않음.)

2) 납부기간 : 2022년 9월 12일(월) ~ 10월 7일(금)

3) 납부방법 : 하나은행 211-910005-69805, 예금주: (학)덕성여자대학교<영재교육원>

\*\*입금자 정보 : 학생이름(학교) ex.나영재(영재초)

다. 지원자 제출서류 - 본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3년 모집요강]에 첨부된 양식 사용

1) 접수기간 : 2022년 9월 12일(월) ~ 10월 7일(금) 17:00까지 (방문 시 12:00~13:00 제외)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택배 접수,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3) 방문 및 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관 4층 438호

영재교육원

4) 이메일 접수 : gifted@duksung.ac.kr

	제출 서류 목록	비고
	지원서 [양식1-1]	본인 및 보호자 작성
일	자기소개서 [양식2]	지원 학생 본인 직접 작성
반 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3]	본인 및 보호자 작성
형	전형료 입금 확인증	특별전형 대상자는 제출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된 등본, 주소지 확인용
특	지원서 [양식1-2]	본인 및 보호자 작성
· 별	자기소개서 [양식2]	지원 학생 본인 직접 작성
전 형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3]	본인 및 보호자 작성
(사 회 통	사회통합대상자 지원서 [양식4]	본인 및 보호자 작성
합	학교장 확인서[양식5]	학교장 직인 필요
전 형)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증빙) 서류	공통 : 주민등록등본 및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전형별 제출서류 참고

#### 7. 전형 절차

#### 가. 서류 접수

- 1)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택배 접수,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 2) 방문 및 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관 4층 438호 영재교육원
- 3) 이메일 접수 : gifted@duksung.ac.kr
- 4) 접수기간 : 2022년 9월 12일(월) ~ 10월 7일(금) 17:00까지
- 5) 서류합격자 발표 : 2022년 10월 14일(금) 12:00 예정

#### 나. 인성/심층 면접

- 1) 대상자 : 서류심사 합격자
- 2) 일시 : 2022년 10월 29일(토) 9:00~17:00
- 3) 장소 : 홈페이지 공지
- 4) 준비물
- 신분증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 문구류 (연필, 지우개)
- 각 모집분야별 준비물 (추후 홈페이지 공지)
- \*대기실 반입금지 물품
- 통신기기(휴대전화 등), 녹음/촬영/녹화기기(녹음기, 카메라, 캠코더 등), MP3, 라디오, PMP, 게임기 등

#### 다. 최종합격자 선정

- 1) 일시 : 2022년 11월 4일(금) 홈페이지 공지
- 2) 방법 :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추후 부정행위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지원자의 합격을 취소하고 차순위 지원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함. 2023학년도 입교식 이후에 부정행위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도 제적 처리

#### 라. 합격자 등록

- 1) 기간 : 2022년 11월 7일(월) ~ 11월 11일(금) 10:00 ~ 17:00 (방문 시 12:00~13:00 제외)
- 2) 방법 :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제출
- 3) 제출 서류: 입학동의서 및 학업서약서, 수업료 입금 확인증
- 4) 수업료(입학금) : 일반전형 300,000원, 특별전형 150,000원(50% 부담)
- 5) 납부방법 : **하나은행 211-910005-69805, 예금주: (학)덕성여자대학교<영재교육원>** \*\*입금자 정보 : 학생이름(학교) ex.나영재(영재초)
-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각 분야별로 차순위 지원자에게 기회 부여

#### 8. 유의사항

- 가. 모집요강의 미숙지에 따른 문제는 본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나.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다. 서류 양식은 본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합니다.
- 라. 선발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마. 서류접수 후에는 전형료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바. 전형료 입금자 정보는 학생이름(학교명), 수업료 입금자 정보는 학생이름(영재교육원반이름)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 최종 합격 후, 합격자 기간 내에 미등록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9. 문의처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관 4층 438호 도봉영재교육원

전화: 02-901-8604, 이메일: gifted@duksung.ac.kr

홈페이지: <a href="http://gifted.duksung.ac.kr">http://gifted.duksung.ac.kr</a>



# 사회통합전형 유형 및 지원 자격

# 1. 기회균등전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일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과는 구분
- 보훈자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의 증빙서류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 소속교에서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
- ▶ 교육지원대상자 외「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에 해당되는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18호 및 제7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차상 위계층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제출한 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교육비지원확인서' 제출한 자
  -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별개임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50% 및 60%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요건】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아동복지법」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증빙 서류 예시】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등

# 2. 사회다양성 전형

■ 사회다양성전형 필수요건

# 2022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 과세 금액은 부모(※ 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모두 확인·합산하여 아래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 ※ 직장가입자 및 혼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주택분) 과세금액 모두 반드시 충족
-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충족 (※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불필요)
- ※ 건강보험료 납입금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을 기준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2022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은 합산에서 제외
- ※ 재산세(주택분)는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재산세 주택 과세 합산금액임
-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납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해 과세된 재산세는 미포함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째산세(주택) 과세금액 기준표]

(단위:원)

	2	2.2.2/= 2.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재샆세(주택) 파세금액
2인	182,739	190,860	185,461	621,840
3인	235,821	258,283	240,332	980,880
4인	287,535	320,986	296,681	1,336,560
5인	350,228	386,763	370,489	1,683,360
6인	398,320	435,141	434,898	2,022,240
7인	473,200	511,899	511,709	2,357,760
8인	511,709	549,554	567,870	2,693,280
9인	567,870	602,760	663,895	3,028,560
10인	663,895	684,512	850,979	3,364,080

## ♦ 건강보험료 기준 및 가구원수 적용 매뉴얼

####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외)조부, (외)조모 제외]
  -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 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기혼인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포함(단, 원수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만 인정).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미포함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친부 또는 친모)를 포함하여 가구원 수 산정

###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친부와 친모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하여 합산

#### ③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방법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소득이 없는 달(한시적으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은 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시 휴직 전 납부된 건강보험료로 산정
  - ※ 입학 지원서 제출 당시 복직한 경우 복직 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로 산정

#### O (적용)

-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O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 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4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혼합 6만2천원)

#### ※ 기타 가구원수 산정 및 사례는 '사회통합전형 O&A' 참조

# ■ 사회다양성 1순위 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 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예시)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다문화가정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함
  - ※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이외 소년· 소녀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 순직군경, 순직소방관,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 ■ 사회다양성 2순위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자녀'의 경우에도 친부·친모의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부금액 (연간)을 모두 확인·합산하여 지원 자격에 맞는 적격자 추천
-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의 자녀※ 자녀 모두 지원 가능(지원 가능 자녀 수 제한 없음)
- 특수직업 종사자 자녀
  - 15년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 15년이상 재직 중인 경감 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
  - 15년이상 재직 중인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 시·도 또는 군·구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



# 대상자 추천 및 선발

- 🛟 학교별 심의 및 검증 절차 준수
- 靠 부정입학에 대한 엄정 조치 : 증명서 위조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된 경우 합격 취소 등 조치

## ■ 학교에서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

○ 추천 절차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GED에서 사회통합자 전형으로 지원 (관련서류 제출)	$\Rightarrow$	관련 서류 담임 확인	$\Diamond$	학교추천위원회 심의	학교장 확인서 발급 및 추천 관련서류 제출 2022.11.28.(월)까지

-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증명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3 단계] 심의 제외 가능
- [1단계] 사회통합전형 지원신청서 제출
  - 학생 및 학부모는 지원 유형, 제출 서류 기입, 지원 자격 및 증빙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한 후 제출 (서식1)
- [2단계] 관련 서류 담임 확인
  - 담임 교사는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 자격 여부 확인
- [3단계] 학교추천위원회 심의
  - (구성) 교감 포함하여 4~8명으로 구성(위원장은 교감,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하여 실무 총괄)
  - (심의 사항) 사회통합전형자의 지원서 내용 및 증빙 서류의 적합성 여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적합한지 여부
    - ※ 대상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 및 심사 서류 내용 등은 철저히 보안에 유의
- [4단계] 학교장 확인서 발급
  - 학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 확인서 (서식2) 발급
- 사회통합전형 서류는 학교에서 확인 후 해당 영재교육원(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영재교육원 운영학교, 과학전시관 등)으로 2022.11.28.(월)까지 직송

# **>> 참고 자료 1**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유형 및 지원자격

구	분	대상자	지원 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기	60%이상 우선선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회 균 등 전 형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전 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이 추천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아동복지법」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포 함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사회다양성전형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성전	1 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당시 「관할 교육자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지로 선정된 자
8 (가구원구별	위	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 원대상자이외 소년·소녀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
<u> </u>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중위소특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순직군경, 순직소방관,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1 6 0 % 하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의 자녀(자녀 모두 지원 가능)
	2 순	군인 자녀	15년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가정의자녀 )	위	경찰(해양경찰) 자녀	15년이상 재직 중인 경감 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
년 )		소방공무원의 자녀	15년이상 재직 중인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시·도 또는 군·구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

# **≫ 참고 자료 2** 시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지	원유형	구 분	제 출 서 류	발 급 처
			○ 주민등록등본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대상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족	동주민센터 지원자 및 학교 작성
	국민기초성	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학교
	한부	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b>フ</b> ルロる	혼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의인서 (또는) 국가보훈기본법 제 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택1)	소속학교 (또는) 관할 보훈지청
	취기포함	눈네당자 조는 그 지다	교육자원대상자외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 훈대상자 확인원	관할 보훈지청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법 정 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기	) 차 상위계층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회 균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등 전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형	기준중위 소득50% 이하 ·	기준중위소득50%이하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구청 동꾸민센터. 학교
	기준중위 소득60% 이하	기준중위소득60% 이하	○ 교육비지원 확인서	학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 공단
	기정형편이 야운 핵생 중 학교장 추천	- 실업급여수급자격인 법원 파산결정문 - 근로소득 원천 징수 - 부모의 사망, 이혼, 인하기 어려운 경우	,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 P 「학교장 추천서」또는「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해당 증빙서류별 확인 가능한 기관
		○ 학교장 확인서 <서	식2> 의 추천사유 란 작성	학교

지-	원유형	구 분	제 출 서 류	발 급 처
	공통 (가구원수별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국민건강보험 공단 (관할지사)
	중위소득 160% 이하)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1부 -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으로 발급받아 제출(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구청, 동주민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 부 또는 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 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사회	100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 사본	해당서류
다	1순위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족의 자녀	<ul><li>사실 관계 확인서(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li></ul>	발급기관
양 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전		순직 군경·소방관·교원· 공무원 자녀	○ 순직군경, 순직소방공무원, 순직교원, 순직공무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형		한부모가족 자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다자녀 가족 (3자녀 이상) 자녀	○ 추가서류 없음	
	2순위	환경미화원의 자녀 (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재직증명서	해당서류 발급기관
		군인 자녀 (중령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 (경감이하)	○ 15년 이상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소방공무원 자녀 (소방경이하)		

- ※ 증빙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은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
-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 참고 자료 3 시회통합전형 국가보훈대상자 범위 및 제출서류

대상자	근거	증명서류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제18호, 제73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5·18민주유공자 (유족) 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 (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유족)확인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는 소속학 교에서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받아 확인서 제출 가능

# 2023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사회통합전형 관련 Q&A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 1 사회통합전형 개요

- Q1 사회통합전형은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나요?
-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유형 및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대상자	지원 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기	60 % 이 상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정 년 등 전 평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센터 에 등록된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전	우선선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형	선 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자
	_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이 추천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b>아동복지법」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포함</b>
삵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사 <del>회</del> 다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전 형	1 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당시 '곤할 교육자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에서 특수교육대상로 선정된 자
· (가구·뭣구별	위	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 원대상자이외 소년·소녀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
천 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순직군경, 순직소방관,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정무소니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1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의 자녀(자녀 모두 지원 가능)
1 <del>60</del> 800	2 순	군인 자녀	15년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위	경찰(해양경찰) 자녀	15년이상 재직 중인 경감 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
가 어 자 녀		소방공무원의 자녀	15년이상 재직 중인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년 <u>-</u>		환경미화원 자녀	시·도 또는 군·구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

# Q2 사회통합전형 지원 및 추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아래 표와 같이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와 기회균등전형, 사회다양성 전형 중 해당되는 유형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	원유형	구 분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대상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족	동주민센터 지원자 및 학교 작성
	국민기초성	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학교
	한부	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국가보훈 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또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 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택1)	소속학교 (또는) 관할 보훈지청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외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관할 보훈지청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기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회 균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전 형	기준중위 소득50% 이하 ·	기준중위소득50%이하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학교
	기준중위 소득60% 이하	기준중위소득60% 이하	○ 교육비지원 확인서	학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 공단
	기정형편이 야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	- 실업급여수급자격인 법원 파산결정문 - 근로소득 원천 징수 - 부모의 사망, 이혼 인하기 어려운 경우	,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 P 「학교장 추천서」또는「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해당 증빙서류별 확인 가능한 기관
		○ 학교장 확인서 <서·	식2> 의 추천사유 란 작성	학교

지	원유형	구 분	제 출 서 류	발 급 처	
	공통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 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1부		
		혼합(지역+직장)	-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으로 발급받아 제출(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구청, 동주민센터	
	1순위	다문화가족 자녀	○ 부 또는 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 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해당서류	
회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 사본		
다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족의 자녀	<ul><li>사실 관계 확인서(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li></ul>	발급기관	
양 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전		순직 군경·소방관·교원· 공무원 자녀	○ 순직군경, 순직소방공무원, 순직교원, 순직공무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형		한부모가족 자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순위	다자녀 가족 (3자녀 이상) 자녀	○ 추가서류 없음		
		환경미화원의 자녀 (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재직증명서	해당서류 발급기관	
		군인 자녀 (중령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 (경감이하)	○ 15년 이상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소방공무원 자녀 (소방경이하)			

# □ 학교에서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 절차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GED에서 사회통합 전형으로 지원 (관련서류 제출)	$\Rightarrow$	관련 서류 담임 확인	$\Rightarrow$	학교추천위원회 심의	$\Rightarrow$	학교장 확인서 발급 및 추천 관련서류 제출 2022.11.28.(원)까지

# 2 유형에 따른 지원자격 및 산정방법

# ■ 기회균등전형

- Q3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전형 대상은?
- □ 지원 학생 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이거나 부 또는 모가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 전형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서 본인, 부 또는 모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보훈대상자 확인 후 전형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 기회균등전형 보훈자 자녀 범위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보훈대상자로서 아래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

#### 예시)

- 1. 증조 할아버지께서 독립유공지로서 지원 학생의 부가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 2. 외할아버지께서 6.25 참전용사로 전사하여 모가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보훈대상자	근거	증명서류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제18호, 제73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5·18민주유공자 (유족) 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 (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유족)확인원

□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자 자녀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Q4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는 어떤 경우가 해당 되나요?
- □ 기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50% 및 60%이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가정에서 부모의 사망, 사업의 파산, 실직 등 갑작스런 사유로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가정으로 전형 지원 시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가정의 자녀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입니다.
- □ 학교에서는 실직급여수급증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폐업 확인서 등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천합니다.
-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학생 또한 이 전형에 포함됩니다.

# ■ 사회다양성전형

- 사회다양성전형 필수요건인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고, 소득과 재산 모두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의 경우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합산 금액이 [참고자료]의 가 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 부모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부모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금액이 [참고자료]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혼합 금액 이하
  - 재산의 경우
    - 부모 각각의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주택 과세 금액 합산 금액이 가구원수별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이하
      -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중 토지, 상가, 건물, 도시지역분, 지역지원시설세 등에 대한 재산세는 미포함

# (기구원수별 중위소득 160%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 과세금액 기준표)

(단위:원)

	<b>カ</b> フ	강보험료 본인부	다그	(211.2)
	116			
,_,,			혼합	재산세(주택)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가	과세금액
			입자)	
2인	182,739	190,860	185,461	621,840
3인	235,821	258,283	240,332	980,880
4인	287,535	320,986	296,681	1,336,560
5인	350,228	386,763	370,489	1,683,360
6인	398,320	435,141	434,898	2,022,240
7인	473,200	511,899	511,709	2,357,760
8인	511,709	549,554	567,870	2,693,280
9인	567,870	602,760	663,895	3,028,560
10인	663,895	684,512	850,979	3,364,080

- **Q6**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정일 경우 가구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 가구원 수 산정은 부모와 자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득 및 재산은 제외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삼촌 가정과 같이 살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부양자가 할아버지이며, 다른 가족 은 전부 피부양자입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할아버지께서 대부 분을, 아버지, 삼촌께서 일부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 게 하나요?

□ 할아버지께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다른 가족이 전부 피부양자일 경우 할아버지와 다른 가족을 포함하여 가구원 수를 산정하며, 재산세 부과 내역은 할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 각각의 재산세 부과액 중 주택분 내역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계시지만 실제로 할머니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주민자치센터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회균등전형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에 따라 부모가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부모의 장기 복역 등으로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 받을 수없는 경우,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고 할머니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는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Q8 재산세 과세 금액 중 포함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과세에서 '재산세 주택'으로 되어 있 는 과세 내역만 합산하시면 됩니다.
- □ 재산세 주택 이외 재산세 과세 시 포함되어있는 토지, 상가, 도시지역분, 지역사회 시설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는 인터넷 정부24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직접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는 과세가 있는 주민등록거주지 관할 구 또는 시와 전국 시·도 지역 과세 내역으로 발급됩니다. [참고자료] 참조
  - Q9 어머니께서 전형일 이전 6개월 중 일부 기간 실직한 경우 건강보 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 일부 기간 실직한 경우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한 달의 평균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 4개월간 근무하였을 경우: 4개월간 근무에 따른 건강보험료÷ 4개월

- 부모님의 소득 이외에 미혼으로 같이 거주하는 형도 경우 소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구원 수와 보험료 및 재산세는 어떻게 산 정되나요?
- □ 부모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전형을 시행함으로 형의 소득 및 재산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 미혼인 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구원 수로 산정됩니다.
  - ※ 미혼인 형제·자매가 성인인 경우 형제 또는 자매 대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받아 미혼임을 확인
  - Q11 다자녀 가족(3자녀 이상)으로 미혼인 형과 누나가 타 시도에 거주 하고 있을 경우 가구원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인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가구원 수를 산 정합니다.
  - Q12 기혼인 형과 누나가 다른 세대로 구성한 경우 다자녀 가족 전형으로 지원가능하나요?
- □ 다자녀가족 전형은 형제·자매의 결혼 여부와 관련 없이 3자녀 이상이면 다자녀가족 자녀전형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결혼하 여 다른 세대를 구성한 경우 가구원 수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 Q13 부모, 기혼인 형 가족, 미혼인 누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구원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 가구원 수 산정은 부모와 자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 모, 형, 누나, 학생 본인만 가구원수로 산정됩니다. 다만, 기혼자인 형의 경우 최소 원서접수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Q14 입양을 통한 다자녀의 경우에도 다자녀가족 자녀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Q15 한부모 가족과 다른 한부모 가족과의 결합에 따른 다자녀 가족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다자녀 가족 전형으로 지원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단, 양부가 입양하여 가족 구성원으로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자녀 중 동거인으로 있는 경우 다자녀 대상 아님) 이 경우 다자녀가족 전형으로 결합된 가정의 부모의 소득과 재산 합산금액으로 산정하여(예: 양부+친모 소득 및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합산, 친부의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는 합산에서 제외)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금액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Q16 한부모 가족인 경우 가구원수 산정, 소득과 재산은 어떻게 합산해야 하나요?

□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혼 전 친부, 친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구성으로 가구원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 모, 형제2명으로 구성된 4인가구가 이혼으로 인하여 부와 분리되어 살고 있는 경우 원 가족인 부, 모, 형제 2명 4인가구로 산정됩니다.

- □ 한부모가족의 경우 친부 및 친모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과세 내역 합산 금액이 [표]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및 재산세 과세금액이 기준표이하 금액이어야 합니다.
- □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친부 또는 친모의 소득 및 재산 내용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Q17 한부모 가족으로 친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해당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18 다문화가족의 자녀 전형 대상은?  □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에시) 결혼이면지(국적법에 따른 대하라)를 받은 자를 포함의 출생 사부터 대한만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  (에시) 결혼이면지(국적법에 따른 대하라)를 받은 자를 포함의 출생 사부터 대한만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  □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한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의 경우 재한외국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ul> <li>□ 한부모가족의 경우라도 친부 및 친부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li> <li>□ 가정폭력 등에 따른 보호조치 등의 처분으로 친부와 연락이 곤란한 경우 보호조치 등 이혼 관련 서류(예시: 판결문)를 첨부하여 어머니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수는 부를 제외한 모와 자녀만으로 산정됩니다.</li> </ul>
<ul> <li>□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li> <li>□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li> <li>□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li> <li>(예시) 결혼이만제국적밥에 때론 귀화하기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li> <li>【인19】 이버지가 외국인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인인 어머니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문화가족 전형으로 지원가능한가요?</li> <li>□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li> <li>□ 여기서 말하는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li> <li>□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의 경우 재한외국인으로 볼 수</li> </ul>	
을 말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예시) 결혼이만자(국작밥에 따른 귀화하기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  ● 아버지가 외국인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인인 어머니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문화가족 전형으로 지원가능한가요?  □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로 의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의 경우 재한외국인으로 볼 수	Q10 나는회기들의 시약 건강 대경근: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예시) 결혼이만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하기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  ○ 아버지가 외국인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인인 어머니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문화가족 전형으로 지원가능한가요?  □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의 경우 재한외국인으로 볼 수	
<ul> <li>○ 아버지가 외국인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인인 어머니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문화가족 전형으로 지원가능한가요?</li> <li>□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li> <li>□ 여기서 말하는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li> <li>□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의 경우 재한외국인으로 볼 수</li> </ul>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
<ul> <li>Q19 한국인인 어머니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문화가족 전형으로 지원가능한가요?</li> <li>□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li> <li>□ 여기서 말하는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li> <li>□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의 경우 재한외국인으로 볼 수</li> </ul>	(예시) 결혼이만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하기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만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
및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의 경우 재한외국인으로 볼 수	Q19 한국인인 어머니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문화가족 전형으로
	및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적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가 우리 나라로 귀화하여 **O20** 다문화 가정을 이루었으나. 현재 이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다문화 가족 전형에 지원 가능할까요? □ 다문화 가정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 에 대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합니다. 아버지는 결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 021 특하였으며, 어머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 우 다문화 가족 전형으로 지원가능한가요? □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외국 국적이며, 어머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 **O22** 니다. 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외국 국적인 경우 다문 화 가족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단.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예정자나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 인정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은 어 **Q23** 떤 경우인가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